

<p>제2020-49호 2020년 3월 13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701호	보상계획 열람공고(대교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 여수시 공고	제2020-705호	여수시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공청회 개최	5
○ 여수시 공고	제2020-713호	준공금 반환요청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0-727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7
○ 여수시 공고	제2020-730호	충무동 로터리 ~ 범민교(강남요양병원 방향)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14

기 타

회 람								
--------	--	--	--	--	--	--	--	--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대교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3.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교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업규모 : L=98m B=8m (846m²)
- 사업기간 : 2019. 12. 31.~2021. 12. 31.

2. 열람공고기간 : 2020. 3. 13.~3. 27.(15일간)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 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 해당사항 없음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m ²)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6)로 문의바랍니다.

여수시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동지구 도시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0. 3. 13.

여 수 시 장

1. 개최목적 : 여수시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3. 27.(금) 14:00
나. 장 소 : 국동주민자치센터 회의실
3. 대상지역 : 여수시 봉산동 274-4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설명
 - 질의응답 및 주민 의견수렴
5. 의견제출
 -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참석을 못하는 주민 등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 내 의견을 우편,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여수시 시청동 1길 23, 도시재생과 재생전략팀
(이메일 kimchango@korea.kr)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2659-4533, 담당자 김창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돌산읍 성두마을 안길 정비공사」의 준공금 지급 시 과 지급된 준공금 반환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금액	반납기한
현주건설 주식회사 (권**)	전남 여수시 울촌면 종개길 *	11,000,000원	2020. 3. 30.

2. 공고기간 : 2020. 3. 13. ~ 3. 27.(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4. 문 의 : 여수시 회계과 (☎061-659-3177)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 3. 13.

여 수 시 장

1. 지정번호: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제2020-3호
2. 지정 위치·구역 및 면적

2-1. 전남 여수시 울촌면 지선

위 치	지점	위도	경도	면 적
여수시 울촌면 지선	가	34° 52' 02.358"	127° 38' 21.442"	3.3ha
	나	34° 52' 04.341"	127° 38' 24.557"	
	다	34° 51' 55.861"	127° 38' 32.490"	
	라	34° 51' 53.878"	127° 38' 29.376"	

2-2. 전남 여수시 신덕동 지선

위 치	지점	위도	경도	면 적
여수시 신덕동 지선	가	34° 49' 58.142"	127° 46' 14.572"	29.4ha
	나	34° 49' 58.143"	127° 46' 15.700"	
	다	34° 49' 46.538"	127° 46' 32.213"	
	라	34° 49' 29.882"	127° 46' 35.047"	
	마	34° 49' 36.015"	127° 46' 23.690"	
	바	34° 49' 36.365"	127° 46' 10.79"	

3. 수산자원의 종류: 새조개

4. 관리수면의 관리자: 여수시장

4-1. 관리수면의 이용자 : (울촌면지선) 울촌면 6개 어촌계

(신덕동지선) 신덕어촌계

5. 어선·어구의 종류 및 수: 울촌면 지선(양식장형망선 3척),

신덕동 지선(양식장형망선 6척)

6.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2020. 2. 28.~ 4. 30.

7. 채취량

7-1. 전남 여수시 울촌면 지선 : 17.53톤 미만

7-2. 전남 여수시 신덕동 지선 : 61.96톤 미만

8. 준수사항 및 제한조건: 붙임 지정내용 및 조건 참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 및 조건

□ 지정내용

- 지정장소: 여수시 율촌면 지선, 신덕동 지선
 - 붙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참조
- 지정기간: 2020. 2. 28. ~ 2020. 4. 30.
- 포획량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지선: 17.53톤 미만
 - 전남 여수시 신덕동 지선: 61.96톤 미만
- 포획·채취 방법
 - 율촌면 지선: 양식장형망선 3척
 - 신덕동 지선: 양식장형망선 6척
- 포획·채취 어업인: 여수시 관리수면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자

□ 지정조건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자는 지정내용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자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지정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자는 제 3자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 다음의 협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귀 시에서 제출한 지정조건(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시행, 보상 청구 금지, 어업분쟁 자체 해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협의구역은 조업 시 항로 및 정박지 침범(횡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시에서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협의구역 인근에 울촌제2산단 투기장이 위치하므로 준설공사 관련 선박 및 준설토 투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조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 가. 어선 및 안전지도선은 항로 및 정박지 침범(횡단), 입·출항 선박 진로방해 금지하며 불가피한 항로횡단 또는 선박 이동시에는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나. 안전지도선은 자동식별장치(AIS) 및 무선통신장비(VHF) 설치하고 상시 VHF의 CH.67을 청취하여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호출 시 즉각 응답하여야 합니다.
 - 다. 어로구역 및 작업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라. 어선 및 안전지도선 등은 작업 시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마. 감시선, 안전지도선 등을 조업구역에 배치하여 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 바. 야간(일몰 후~일출 전)에는 채취 어선 등 관련선박의 항행을 절대 금지하여야 합니다.
5.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상 필요하거나 협의 조건을 위반 시 여수시에서는 본 승인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우리청에 배상 요구 할 수 없습니다.
6.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청 어촌계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분쟁은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8.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작업 전에 어선명단, 작업일정, 비상연락망 등을 우리청,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합니다.
9.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작업 시 설치된 항로표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 해역에 부표 설치 시 형상, 등색, 등질 등을 주변 국유표지와 다르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시 우리 청,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회신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 간섭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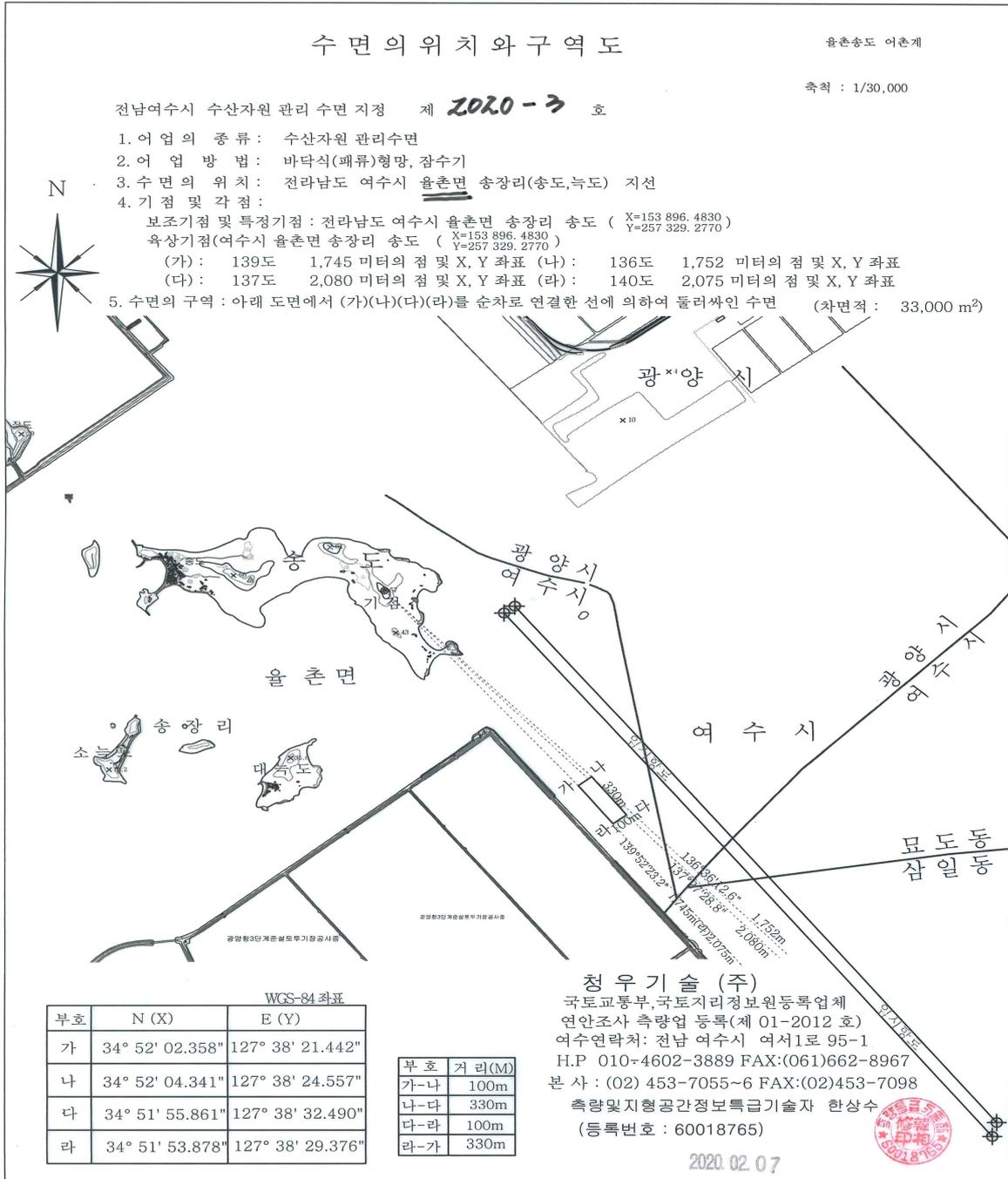
-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주)에서 회신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OKYC부두와 안전거리(540M) 이격 조정이 필요하고 어로행위로 인한 항만구역내 어선 통항 불가, 부산물 관리 철저 및 어구 등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를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비치 등)와 제42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여수시에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사항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과 인근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울촌면 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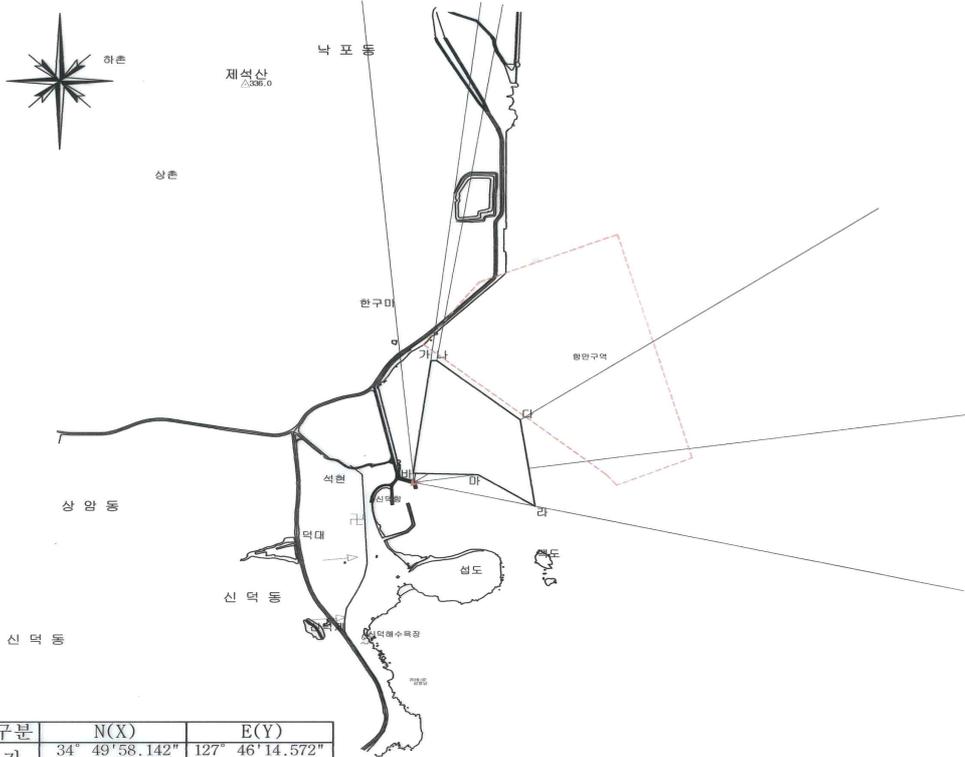
○ 신덕동 지선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전남 여수양식 어업 제 2020-3 호

축척: 1/25,000

1. 어업의 종류 : 수산자원관리수면
2. 양식방법 :
3. 수면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지선
4. 기점(보조기점)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기점 (▲ 34° 49' 34.593" / 127° 46' 10.949")
5.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가)(나)(다)(라)(마)(바)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어장의 면적 : 294,000m² (29.4ha)



구분	N(X)	E(Y)
가	34° 49' 58.142"	127° 46' 14.572"
	148 816.6100	270 236.2876
나	34° 49' 58.143"	127° 46' 15.700"
	148 816.8702	270 264.9474
다	34° 49' 46.538"	127° 46' 32.213"
	148 462.4662	270 687.2913
라	34° 49' 29.882"	127° 46' 35.047"
	147 949.7347	270 763.2733
마	34° 49' 36.015"	127° 46' 23.690"
	148 136.5148	270 473.2100
바	34° 49' 36.365"	127° 46' 10.790"
	148 144.7851	270 145.3163

부호	거리(M)
가-나	29
나-다	551
다-라	518
라-마	345
마-바	328
바-가	678

대건GPS측량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306, 304호
 TH : 743-4275, FAX : 727-0817
 측지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윤호
 (등록 번호 : 88206050042)

48277-26011 민
 93.12.13승인

257mmx364mm(인쇄용지(2급)60g/m²)
 WGS84 좌표 적용

충무동 로터리~범민교(강남요양병원 방향)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서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서교동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이용률 증대와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 3. 13.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명 : 충무동 로터리~범민교(강남요양병원 방향) 노상주차장 폐지
2. 행정예고 및 목적 : 한재사거리~충무동 로터리 일원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요양병원 방향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3. 운영 예정시기 : 2020. 4. 3.(금)

4. 행정예고 내용

○ 노상주차장 폐지

노상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수	비 고
충무동 로터리 ~ 범민교 노상주차장 (강남요양병원 방향)	여수시 충무동 346	9	

5.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게시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3. 13.(금) ~ 2020. 4. 1.(수), 20일간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여수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1] 참조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20. 3. 13.(금) ~ 2020. 4. 1.(수)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여수시 교통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전 화 : 061) 659-4148

· 팩 스 : 061) 659-5837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